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신동화 간사 02-723-5302 hwa@pspd.org)

제 목 [논평] 국회,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원 사찰 진상규명해야

날 짜 2017. 3. 6. (총 2 쪽)

논 평

국회,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원 사찰 진상규명해야

국정원 개혁 이유 분명해져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 등 국정원 개혁 서둘러야

1.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의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민감하고 중차대한 시점에 헌재를 상대로 한 정보 수집은 가히 충격적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정보원법(이하 국정원법) 위반을 넘어,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해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대통령과 현 정권의 유지를 위해 활동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국회는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해당 정보의 수집 경위와 보고라인 등 진상을 신속히 밝히고 관련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의 한 4급간부가 박근혜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전담해 올해 초부터 동향정보를 수집해왔다고 한다.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문건이 공개되어,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또 다시 국정원은 동향보고라는 이름으로 위법행위를 버젓이 자행했다.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위법행위로 ‘동향정보’라는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의 정보를 수집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3.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사를 제소하겠다고 하나 그간 국정원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 다른 기관과 민간인 등을 사찰하고 국내정치에 개입해온 사실이 어제오늘의 아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이유가 다시 명확해 졌다. 또 다시 국정원의 초법적 행태를 묵인 한다면 2012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재현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기능을 폐지하고, 직무범위를 벗어날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국정원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도 국정원 개혁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의지를 밝히고, 차기정권에서 이를 실행해야 한다. 끝.